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615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동하

피 고 1. B

2.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C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토지를 지칭할 때는 예를 들어 ‘1토지’와 같이 별지 목록의 항으로만 구분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2020. 3. 3. 체결된 공유물분할을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D 사이에 6토지에 관하여 2023.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는 D에게 6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2027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27. 'D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별건 판결은 2024. 2. 8. 확정되었다.

나. D은 피고 B과 1~5토지를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2020. 3. 3.자 공유물분할(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다음날 D의 위 각 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D은 2023. 8. 24. 자신의 소유인 6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9. 27.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 7,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건 판결의 채권은 2013. 9. 18. 발생하였는데, D은 그 후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채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피고 B은 1~5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6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부족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경우

앞에서 든 증거와 갑3, 4,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 1~5토지 중 각 1/2 지분과 6토지 외에도 파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 파주시 F 토지 중 1/2지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 당시 위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6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5,600만 원과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2~5토지와 위 F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유물분할 당시 D의 위 적극재산의 가액과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갑12, 14호증의 각 토지대장에 기재된 공시지가가 토지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로 D의 소유이던 1~5토지 중 각 1/2지분이 피고 B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부족정도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 파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 파주시 F 토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위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위 적극재산의 가액과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D의 소유이던 6토지가 피고 회사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부족정도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별지